|  |  |  |
| --- | --- | --- |
| **증치세 세율 합병 정책에****대한 통지**재세[2014] 57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세제를 한층 더 규율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부담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6%와 4%의 증치세 세율을 합병하여 3%로 통합시키기로 결정하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1. <일부 화물의 증치세 저세율 적용 및 간이방법 적용 증치세 징수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 9호) 제2조 제(1)항과 제(2)항 중 “간이방법에 따라 증치세 징수율을 4%에서 반감”하는 것을 “간이방법에 따라 증치세 징수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한다.<전국에서 증치세 전환 개혁을 실시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8] 170호) 제4조 제(2)항과 제(3)항 중 “4%의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반감 징수”하는 것을 “간이방법에 따라 증치세 징수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한다.2. 재세[2009] 9호 문건 제2조 제(3)항과 제3조의 “6%의 징수율에 따라”를 “3%의 징수율에 따라”로 조정한다.3. 재세[2009] 9호 문건 제2조 제(4)항의 “4% 징수율에 따라”를 “3%의 징수율에 따라”로 조정한다.4. 이 통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재정부국가세무총국2014년 6월 13일 |  | **关于简并增值税征收率政策的****通知**财税[2014]57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进一步规范税制、公平税负，经国务院批准，决定简并和统一增值税征收率，将6%和4%的增值税征收率统一调整为3%。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部分货物适用增值税低税率和简易办法征收增值税政策的通知》（财税〔2009〕9号）第二条第（一）项和第（二）项中“按照简易办法依照4%征收率减半征收增值税”调整为“按照简易办法依照3%征收率减按2%征收增值税”。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全国实施增值税转型改革若干问题的通知》（财税〔2008〕170号）第四条第（二）项和第（三）项中“按照4%征收率减半征收增值税”调整为“按照简易办法依照3%征收率减按2%征收增值税”。　　二、财税〔2009〕9号文件第二条第（三）项和第三条“依照6%征收率”调整为“依照3%征收率”。　　三、财税〔2009〕9号文件第二条第（四）项“依照4%征收率”调整为“依照3%征收率”。　　四、本通知自2014年7月1日起执行。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4年6月13日 |